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여 해당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음5G 망 내에 개설되는 지능형 CCTV 등 고정형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되,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등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원래 검사 시기보다 검사를 앞당겨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TV, 스마트센서 등)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전파사용료 부과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완화

마.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 (안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에 노임단가와 출장여비 등을 합한 실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심사 수수료를 완화하고, 시험기관의 심사비용 납부 절차 등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바. 시행령 규정 정비 (안 제13조, 제40조, 제41조, 제123조의3)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활용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MHz 이상 4,820MHz 이하 또는 28.9 GHz 이상 29.5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로 기지국·육상국(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해 무선통신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이동국용 무선기기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 하여야 하며, 시설자 지위승계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전단 중 “제45조제2항에”를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

은 무선국: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기준 무선국”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기준 무선국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이하 이 항에서 “정기검사 시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은 제44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할구역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기검사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검사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우”를 “경우 중소기업 또는”으로, “가입자”를 “가입자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누설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1. 삭제

2. 삭제

제10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

국에 대하여는 별표 13의2와 같이 잔여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제96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3조의3에 제3호의4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과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3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 수수료는 신청하는 동시에 수입인지로 내야한다.
2.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심사비용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4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산정하는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3의2]

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면(제101조제5항 관련)

잔여 유효기간	감면율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00분의 20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100분의 30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100분의 40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00분의 50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100분의 60
4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100분의 70
48개월 초과 54개월 미만	100분의 80

비고

1. “유효기간”이란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의미한다.
2. “잔여 유효기간”은 기준 무선국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

평가항목		수수료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측정 주파수당)		23천 원
전도성 방호성능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험)	단펄스	135천 원
	중펄스	113천 원
	충전선 펄스	102천 원
	삽입손실	168천 원
전도성 방호성능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현장에서 시험)	단펄스	160천 원
	중펄스	135천 원
	충전선 펄스	122천 원
	삽입손실	189천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생략)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 -----.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u>만 4,720MHz 이상 4,820MHz 이하 또는 28.9GHz 이상 29.5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로</u> <u>기지국·육상국(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해 무선통신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자가</u> <u>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이동국</u>

②·③ (생략)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생략)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시설자 지위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용 무선기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 하여야 하며, 시설자 지위승계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 3. (생략)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다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

-----.

-----.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기준 무선국”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기준 무선국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이하 이 항에서 “정기검사 시기”라 한다) -----.
다만,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은 제44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정한다.

1. 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할구역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기검사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검사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③ ~ ⑩ (생략)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u>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빼고 산정한다.</u>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중소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u>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 ----- ----- ----- ----- ----- ----- ----- ----- 2026 년 12월 31일----- ----- -----. <삭 제>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
---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
라 한다)인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
공한 경우 중견기업인 전기통
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
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8조의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고출력·누설 전
자파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경우 중소기업 또는 -----
-- 가입자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
00분의 100

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
00분의 80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
00분의 5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
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
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

료(측정지점당): 29만7천원

2.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

료(도전성 선로 1개당): 58만6

천원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④

(생략)

<신설>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
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1. 삭제

2. 삭제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별표 1
3의2와 같이 잔여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의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u><신설></u>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u> <u>전과사용료 부과·징수에 관</u> <u>한 사무</u> 4. ~ 6. (현행과 같음) <u>7.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른</u> <u>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u> <u>수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과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4924